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								
위 임 창	위임을 받은 자	한글 (한자)()	생년월일		일		
	주 소				발급	급통수		
	사용용도		위임사유				관계	
	본인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 년 월 일							
	위임자: 주 소:	0	(생년월일	;)		
법 정 대 리 인 동 이	(성명:)에 대한 증명서 빌	남급을 동의합 ⁽	니다.			발급통수	
	법정대리인 : 관계:	Έ	년 월 (생년월일	:	일)		
	주소:					인감		

※ 유의사항

- 1.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,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.
- 2. 2부 이상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3.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를 위임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 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4.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, 피위임자(위임자)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[주민등록증, 자동차운 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)]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
- 5.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(예 :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)는 「형법」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6. 시설 수급자의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.
- 7.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